

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

화신사이버대학교(이하 ‘대학’이라 한다)와 _____(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계약의 목적은 _____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화신사이버대학교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2조 (위탁교육의 과정)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원격대학 과정으로 한다.

제3조(위탁생의 자격) 고등학교(/대학교)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, _____에서 근무 중인 자로 한다.

제4조(위탁생의 선발과 입학) ①위탁교육 대상자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일괄 추천한다.

②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
③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회사 또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.

제5조 (회사의 시설사용)

회사의 시설 사용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시설의 목록, 사용방법 등을 작성하고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.

제6조(회사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동) 위탁 회사의 임직원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임교수 또는 비전임교수로 위촉(임명)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비 및 등록) ①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대학의 학생 납입금 수준으로 하되, 회사와 협의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.

②기타 위탁생의 교육비와 관련한 세부사항 기재

제8조(위탁생의 신분)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화신사이버대학교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,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제9조(대학에 대한 회사의 지원)

※ 대학에 대한 특별한 지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약정서의 본문 또는 별표에 명시토록 함.

제10조(위탁교육협력위원회)

※ 대학과 회사는 약정에 의거 위탁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.(이 경우 동 위원회의 기능 등 소관사항 명시)

202

화신사이버대학교 총장 황주권 (인)

_____ (인)

■ 산업체 위탁교육업체(단체) 정보

업체명	업종	주소	전화번호	근로자수